

영등포구의회
제19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
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고 기 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3. 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0호로 2017년 2월 22일 고기관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,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기소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토록한, 현재의 조례 규정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8곳¹⁾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·시행중에 있는 바,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,
-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에 따라 월정수당은 의원신분을 유지하는 한 지급되는 급여의 개념이고,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보전의 성격으로써,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따라서,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,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, 의정활동비 등 실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은 사회통념상 “무노동 무임금”의 원칙과 “무죄 추정”의 원칙이 상충될 수 있지만, 안 제5조 단서 규정에 의거, 무죄 확정판결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

1) 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: 서울시의회, 송파구의회, 관악구의회, 중구의회,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,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, 원주시의회, 서산시의회

마련함으로써 위법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,

- 또한, 의회입법의 자율권 범위내에서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